

[별지 제158호서식] <개정 2008.6.20>

No	No								
과태료부과 대상 차	과태료부과 대상 차								
1. 일시 : 년 월 일 (:)	귀하의 차량은 주·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.								
2. 장소 :									
3. 등록번호 : (차종 : , 형식 :)	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우리 (시·군·구)청 ○○과(전화 : -)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만일 귀하께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 운전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4. 적용법조 : (과태료금액 : 원)	년 월 일								
5. 위반내용 :	○○시장(군수·구청장) (인)								
6. 취급자 :	소 유 자 귀 하								
소속 :	<table border="1"><tr><td>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반일시</td><td>년 월 일(:)</td></tr><tr><td>위반장소</td><td></td></tr><tr><td>위반내용</td><td></td></tr></table>	등록번호		위반일시	년 월 일(:)	위반장소		위반내용	
등록번호									
위반일시	년 월 일(:)								
위반장소									
위반내용									
성명 :									

← 5cm → ← 10cm →

↑
↓
15cm

비 고

1. "과태료부과 대상 차"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.
2. "과태료부과 대상 차"의 문자색채는 적색으로 하고, 그 밖의 문자는 검정색이나 감청색으로 하며,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.
3. 운전자의 앞면, 옆면 유리 외의 곳에 부착 시는 3배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